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7호(2002. 11. 6)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단지의 용지 취득사유가
발생하고,
-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전시와 교육자료 제공
목적으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과
-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 ▶

- 위 치 :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1(오창과학산업단지 내)
- 단지규모 : 165,290㎡(50,000평)
- 사업기간 : 2003. 1~2003. 12
- 사 업 비 : 22,046,000천원 (165,290㎡, 50,000평)
 - 국 비(90%) 19,841,000천원 (148,761㎡, 45,000평)
 - 도 비(10%) 2,205,000천원 (16,529㎡, 5,000평)
- ※ 지분취득

◀ 산림박물관 건립 ▶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산림환경연구소내)
- 규 모 : 부지 992㎡(300평), 연건평 1,653㎡(500평)
- ※ 지하 1층, 지상 2층
- 사업기간 : 2003. 1~2005. 12(36개월)
- 사 업 비 : 4,200,000천원(국비 2,100,000 도비 2,100,000)

◀ 생태체험관 건립 ▶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3 (산림환경연구소 내)
- 규 모 : 부지 1,488㎡(450평), 연건평 1,617㎡(489평,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2. 11 ~ 2003. 12(14개월)
- 사 업 비 : 3,400,000 천원(국비 1,020,000 도비 2,380,000)

《 주차타워 건립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청사내 신관북쪽주차장)
- 시설규모 : 2,763㎡(836평,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면 168면)
- 사업기간 : 2003. 1 ~ 2003. 12
- 사 업 비 : 815,602천원(도비 100%)

5. 검토의견

○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을 검토한 바

이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의 취득과, 산업사료의 보전전시와 교육자료 제공을 목적으로한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

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은

산업자원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금년도부터 부지매입 방식을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 단지면적 5만평(220억 4천 6백만원)중 10%에 해당하는 5,000평(22억 5백만원)을 지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외국인 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산림박물관 건립은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전 전시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미동산 수목원과 미동산 산림환경 생태원을 연계한 중부내륙의 산림교육·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을 2005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도의 중요한 산림자료를 보존 전시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 생태체험관 건립은

건전한 산림생태기능을 갖춘 중부내륙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환경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청원군 미원면 산림환경연구소 100ha의 산림에 생태체험관을 비롯한 체험 학습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및 기반조성비로 5억원,

2002년도 본예산에서 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2. 9. 9일 생태체험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
는 사항으로
산림환경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
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체험관 건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한데도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연도별 투자 및 시설 배치계획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에 대
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타워 건립은

부족한 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체에너지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도이치
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 부지의 중복투자
계획에 대한 대책과 주차타워 세부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